

제 3 장 운 영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 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으로 한다.

2. 입소 대상

가.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②.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나. 제2항 가목 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할 수 있다.

라. 제2항 가목 2호 및 3호의 입소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소신청서
- ② 관련증빙자료 각 1부

마. 제1항 가목 1호의 일반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 ① 건강진단서 1부(감염병검사포함)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입소자 및 보호자 별도)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바. 제1항 가목 2호, 3호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이용 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면 시설장은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토록 조치한다.

3. 입소자의 모집

입소자 모집은 인터넷, 홍보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 입소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입소자를 모집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갑” 과 서비스이용자 “을”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4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4. 2024년 1월 1일 수가인상 반영으로 인한 제12조의 시설 입소비용 정정
 5. 2025년 1월 1일 수가인상 반영으로 인한 제12조의 시설 입소비용 정정

<별표 1- 제12조 관련>

시설 입소 비용

■ 입소 보증금 - 없음

■ 입소 비용 : 2025년도 기준 (30일 기준)

2024년 변경전 (30일 기준)			2025년 변경후 (30일 기준)				
1등급	1일 수가 84,240원		1등급	1일 수가 86,030원		식대+간식	합계
	일반 (20%)	505,440원		일반 (20%)	516,180원	411,000원	927,180원
	감경 (12%)	303,264원		감경 (12%)	309,708원	411,000원	720,708원
	감경 (8%)	202,176원		감경 (8%)	206,472원	411,000원	617,472원
2등급	1일 수가 78,150원		2등급	1일 수가 79,810원			
	일반 (20%)	468,900원		일반 (20%)	478,860원	411,000원	889,860
	감경 (12%)	281,340원		감경 (12%)	287,316원	411,000원	698,316
	감경 (8%)	187,560원		감경 (8%)	191,544원	411,000원	602,544
3/4 등급	1일 수가 73,800원		3/4 등급	1일 수가 75,360원			
	일반 (20%)	442,800원		일반 (20%)	452,160원	411,000원	863,160
	감경 (12%)	265,680원		감경 (12%)	271,296원	411,000원	682,296
	감경 (8%)	177,120원		감경 (8%)	180,864원	411,000원	591,864
구 분		세부내용			합계	일	금액
식대 + 간식		식대비: 4,200원 간식비: 1,100원			5,300원	30	411,000원

■ 비급여 항목 <별표2 - 제139조 관련>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식 재료비	1식 4,200원*3식	1일 12,600원	
간식비	1회 1,100원*1회	1일 1,100원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 1일	1일 15,000원	
상급침실 이용료	2인실 * 1일	1일 10,000원	
진료,약제비	외래 진료 및 약제비 비급여액	실 비	
이 미용	외부, 방문 이미용	실 비	
요청 물품	보호자, 또는 요청에 의한 물품	실 비	